



어린이 정치아카데미

★ 대상: 9~12세 어린이

제1강

1월 23일(목)

19:00~19:50

비상계엄 사태로
본 민주주의

제2강

1월 24일(금)

19:00~19:50

더 나은 세상은
누가 만드는가?

★ 강사: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전 국회의원

★ 참가비: 강의 당 1만원 (1·2강 모두 수강 시 수료증을 드립니다.)

★ 문의: 정치하는엄마들 010-3693-3971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정치아카데미》

제1강 비상계엄 사태로 본 민주주의

- 일시: 2025년 1월 23일(목) 19:00~19:50, 온라인 강의
- 강사: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전 국회의원)

1.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개

- 2017년 창립

-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 받는 사람,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 엄마들과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제정 2017. 6. 11., 일부개정 2024. 3. 16.]

전문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공동체·지역·공동체·국가·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 <개정 2021. 3. 2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정치하는엄마들'이라 한다. 영문명은 'Political Mamas'로 한다.

제2조(목적)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7.>

제3조(사업) ① 정치하는엄마들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2. 아동과 '엄마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 노동, 복지, 환경, 교육, 안전, 평화 등 제 분야의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3. 아동과 '엄마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조직 사업

4. 아동과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5. 기타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국내외 연대 활동

② 정치하는엄마들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27.]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정치하는엄마들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의 통치하는 기구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법원·헌법재판소)로 이뤄집니다.

- 삼권분립(권력분립)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분리하여 권력을 가진 통치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화)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 비상+계엄

- 계엄(Martial law, 마셜 로): Martial(마셜, 전쟁의·군인의) + Law(로, 법)

- 대통령은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계엄사령관(군장성)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또한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국민의 자유를 억압)를 할 수 있게 되므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비상계엄은 정부의 권력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 집중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는 상태입니다. 즉 비상계엄은 전쟁 등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만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신중을 기해 선포해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사변: 전쟁에까지 이르지 않는 않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또는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법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3.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전쟁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나요?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정부 관료의 탄핵을 추진 중이고, 정부 예산안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여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탄핵이란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료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도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탄핵 절차와 예산 삭감을 내란 또는 반국가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니다.

- 12월 7일 전·현직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법학자들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며 계엄 선포에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 헌법학자들도 나섰다 “계엄은 위헌...탄핵소추로 돌발행동 막아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551.html

<참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577.html

4. 윤석열 대통령은 왜 내란죄로 고발 당했나요?

-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를 내란죄라고 합니다.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형법 제9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분 만에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국회의장은 밤 11시경 담장을 넘어 겨우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11시 50분경에는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입니다.

-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형법 제91호제2호에서 설명한 대로 헌법 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고 권능행사를 못 하게 막은 국헌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참고>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헌정 유린’ 431분의 타임라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20>

5.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국군 통수권자로 대한민국의 군대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고발당한 피의자이고, 많은 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은 위헌이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국군 통수권을 몰수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이후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정치가 혼란한 국가와 그 나라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한국 여행 자제 국가로 지정하는 나라도 많아서 한국을 찾던 외국 여행객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주식의 가치)은 계엄 선포 이후 15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직무 정지하고 정치 상황을 안정시켜야만 경제적 피해를 여기서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참고>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韓경제 운명 앞으로 1~2주에 달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147200002?input=1195m>

6.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민주주의 지키자는 구호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뭔가요?

- 민주주의(democracy, 데모크라시)는 그리스어 데모스(민중, 사람들)와 크라토스(권력, 지배)가 합쳐진 말로 모든 국민이 주권(≈통치권, 지배권)을 갖는 정치 형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와 같은 통치 기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민주주의는 1명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전제정치(autocracy, 오토크라시, =독재 정치), 소수의 지배층에게 국가 권력이 집중된 과두정치(oligarchy, 올리가키)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장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1장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화국(Republic, 리퍼블릭)이란 개인의 자유, 사적인 권리뿐 아니라 공공선(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등의 문구에서 공화주의 사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계엄 조건에 위배되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계엄군을 앞세워 힘으로 막으려 했으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모든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